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남창진 의원 (찬성자 33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2513 호

다. 발의일자 : 2025. 3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4. 2.

2. 제안이유

- 2017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‘특정관리대상시설’이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의 ‘3종시설물’로 편입되었고,
- 2024년 12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기존의 ‘1종시설물’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‘2·3종시설물’까지 확대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음.
- ‘3종시설물’과 ‘법정외 시설물’을 ‘1종·2종이외시설물’로 묶은 부분에서 ‘3종시설물’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함임.

3. 주요골자

가.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3종시설물을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정의함(안 제3조제17호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5. 04. 05. ~ 04. 09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) 제7조제3호1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3종시설물’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여,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도 1·2종 시설물과 동일하게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6. (생략) 17. “1종·2종이외시설물”이란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. 18.·19. (생략)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“3종시설물”이란 특별법 제7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 18.·19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과 하천복개구조물,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1종·2종이외시설물 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③ ~ ⑤ (생략)	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1종·2종·3종시설물 ----- ----- -----. ② 1종·2종·3종이외시설물 ----- 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1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(시설물의 종류) 3. 제3종시설물: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시설물

- 특별법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²⁾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의무를 부과³⁾하고 있음.
- 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의 규모나 구조적 중요성, 안전관리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·2종 시설물⁴⁾과 1·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지정·고시된 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는데(〔붙임〕 참고),
- 3종 시설물은 당초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·관리해오던 ‘특정관리 대상시설’이었으나,
-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⁵⁾하기 위해 2018년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음.
- 반면, 현행 조례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 및

-
- 2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3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(이하 “시설물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수립하여야 한다.
 - 4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(시설물의 종류)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(이하 “제1종시설물”이라 한다)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(이하 “제2종시설물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 - 5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‘특정관리대상시설’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함께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해오고 있었으나 ‘특정관리대상시설’에 대해서는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. <시행 2018.1.18.>

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⁶⁾하고 있으나 그 대상 시설물을 ‘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등’으로 정하고 있으며, 1종·2종이외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⁷⁾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이에 안 제3조제17호는 ‘제3종시설물’의 정의를 특별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‘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지정·고시⁸⁾된 시설물’로 명시하는 한편,
- 안 제6조제1항을 통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법정 시설물인 ‘3종시설물’에 대해서도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- 이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‘3종시설물’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3종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할 뿐만 아니라 조례와 상위법령 간의 통일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

-
- 6)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하천복개구조물,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7)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② 1종·2종이외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8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(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·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·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조치라 사료됨.

- 또한, 서울시는 2018년 3종시설물이 특별법에 편입된 이후 3종시설물을 지정하여 법정시설물로 관리해오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 기존 시설물 관리체계와도 부합한다 하겠음.

[표] 서울시 시설물 현황

(2025.4.1.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(FMS) 기준)

구분	계	교량				고도양구	터널		옹벽			절토사면	상하수도			하천				기타
		도로교량	육교	복개구조	철도교량		도로터널	지하차도	건축물옹벽	도로옹벽	기타옹벽		도로사면	공공하수처리시설	공공상수도	지방상수도	배수펌프장	수문 및 통문	제방	
합계	1,806	548	149	47	1	9	53	193	4	66	9	7	5	190	149	233	19	2	122	
1종	584	111	-	21	-	-	17	7	-	-	-	-	-	190	82	154	-	2	-	
2종	489	123	-	26	-	9	29	63	3	58	1	7	5	67	79	19	-	-	-	
3종	733	314	149	-	1	-	7	123	1	8	8	-	-	-	-	-	-	-	122	

- 참고로, 특별법 개정(24.12.3.개정)으로 25년 12월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기존 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인 제2·3종 시설물까지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
- 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는 현재 지정·관리 중인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2종·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현황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,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[붙임] 시설물의 종류

[붙임] 시설물의 종류

□ 시설물의 종류⁹⁾

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 관련)

구 분	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시설물안전법)		
	1종	2종	3종
도 로 시 설	교 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○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○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○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-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도로교량 -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의 교량 ○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-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
	터 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·일반국도 및특별·광역시도의 터널 ○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○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-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- 농어촌도로의 터널 ○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○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
	방음 시설	-	○ 「도로법시행령」 제3조제7호의 방음시설 중 터널구조로 된 시설
	육 교	-	○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
	지하 차도	○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	○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

9)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중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해당하는 시설물만을 발췌.

구 분	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시설물안전법)		
	1종	2종	3종
지하도상가	○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 면적을 포함한다)	○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㎡ 이상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 포함)	○ 5,000㎡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을 포함)
옹벽/절토사면	-	○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○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	○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옹벽으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100미터 이상인 옹벽 ○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옹벽으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
하 천	하 구 독		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·터널·옹벽·항만·댐·하천·상하수도 등의 구조물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
	○ 하구독 ○ 포용조수량 8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	○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	
	수문 및 통문		
	○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(通門)	○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○ 특별시,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	
	제 방		
		○ 국가하천의 방[부속시설인 통관(通管) 및 안(護岸)을 포함한다]	
보			
	○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	○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	
상하수도	○ 광역상수도 ○ 공업용수도 ○ 1일 공급능력 3만㎡ 이상의 지방상수도	○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○ 공공하수처리시설(1일 최대 처리용량 500㎡ 이상인 시설만 해당됨)	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·터널·옹벽·항만·댐·하천·상하수도 등의 구조물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

구 분	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시설물안전법)		
	1종	2종	3종
공동구		○공동구	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·터널·옹벽·항만·댐·하천·상하수도 등의 구조물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
기 타	-	-	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·터널·옹벽·항만·댐·하천·상하수도 등의 구조물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